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 4. 14.
북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 3. 24.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5. 3. 25.
- 다. 상정일자 : 제11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5. 4. 14)
상정, 심사, 가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창수 청소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2004.11.30, 대통령령제18593호)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 포상금 지급 금액 차등화(안 제3조관련 별표1)
 -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4조)

○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

○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금액

-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전국기준 월 50만원, 마포구기준 년 300만원으로 함(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2004.11.30 대통령령제18593호)의 개정 및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환경부)”에 의거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3조관련 별표에서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16조에서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국기준 월 50만원 또는 마포구 기준 연 30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신고포상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대해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부과를 하였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바, 주민참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단속인력을 보강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도모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2004년 5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음.

2004년 우리구 1회용품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식품접객업소 및 목욕장 등 총 6,883개 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였고,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 실적은 신고 건수 75건, 과태료 부과 9,900천원, 75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4,300천원을 집행한 바 있음. 향후 관계 부서에서는 1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사업자의 준법의식 및 구민의 참여의식 제고로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화 및 검소한 소비문화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송태섭 위원) : 슈퍼에서 비닐1장에 20원 받는 이유는?
- 답변요지(김창수 청소환경과장) : 자원절약차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하지 않고 유상으로 하여 장바구니를 사용토록 유도하는 것임.
- 질의요지(정해원 위원) : 식당에서 나무젓가락 사용을 무조건 안됩니까?
- 답변요지(김창수 청소환경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질의요지(이매숙 위원) : 뷔페식당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해도 되는 거죠?
- 답변요지(김창수 청소환경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1회용품 단속 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가 많은데 대책은?
- 답변요지(김창수 청소환경과장) : 파파라치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을 내렸음.
- 질의요지(박영길 위원) : 2004년도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는?
- 답변요지(김창수 청소환경과장) : 거의 파파라치가 신고하였음.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식당에서 1회용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장애인이 1회용품을 사용하여 신고하였을 경우는?
- 답변요지(김창수 청소환경과장) : 담당이 현장을 방문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 질의요지(신동선 위원) : 상춘객이 버린 1회용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 답변요지(김창수 청소환경과장) : 소각장으로 옮겨 처리함.
- 질의요지(김순금 위원) :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 답변요지(김창수 청소환경과장) : 선의의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고포상금을 내리고, 과태료를 인하하려는 것임.
- 질의요지(윤동현 위원장) : 담당 1명이 모든 것을 처리하기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 답변요지(김창수 청소환경과장) : 지도위주로 처리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 3.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2004.11.30, 대통령령제 18593호)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골자

가.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1)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 차등화(안 제3조관련 별표1)
- (2)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4조)

나.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

다.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금액

-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전국기준 월 50만원, 마포구기준 300만원으로 함(안 제16조)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개정근거

-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2004.11.30, 대통령령제18593호)
-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4.12.10, 환경부령제00164호)
- (3) 1회용품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2004.12.30, 환경부 폐기물정책과-4686)

나. 예산조치 : 2005년도 일반회계예산에 기편성

다.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라. 협 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 타

- (1) 입법예고 : 2005. 2. 5. ~ 2005. 2. 25 (특이사항 없음)
- (2)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
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3)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5. 3. 14)
-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관련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호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5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하되,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각 호에”를 “각 호의1에”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월 5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전국기준 월 50만원 또는 마포구기준 년 300만원”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신고포상금의 조달 및 지급) 신고포상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 상 금 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 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5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2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5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3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15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팔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15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다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과 영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5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2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5	10	30	2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사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제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	10	30	2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1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①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위반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① <삭 제>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생략)		제10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 297mm) 또는 1,000입방센티미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15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제15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 ----- 하되,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16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제16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1.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 각 호의 1에 -----		
2. (생략)		2. (생략)		
3. 신고자의 포상금합계가 월 5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3. ----- 전국기준 월 50만원 또는 마포구기준 연 300만원 -----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제18조(신고포상금의 조달)신고포상금은 예산을 편성하여 조달한다.		제18조(신고포상금의 조달 및 지급)신고포상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운영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별표1]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만원)

현행					개정안				
과태료				포상금액	과태료				포상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제10조)	100	200	300	20	(현행과 같음)				
가.(생략)					가.(현행과 같음)				
(1) 객실과 객실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1) -----	50	100	200	10

(2) 객실과 객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7	(2) -----	30	50	100	5

(3)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 -----	10	30	50	3

현행					개정안				
과태료				포상금액	과태료				포상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4)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 급식소	10	30	50	3	(4) -----	5	10	30	2
나.(생략)					나.(현행과 같음)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100	200	300	20	(1) -----	50	100	200	1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2) -----	30	50	100	5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30	50	100	7	(3) -----	10	30	50	3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	300	300	300	300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100	200	300	15

현행					개정안				
과태료				포상금액	과태료				포상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하)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하)	
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30	라. -----대규모 점포중 백화점·전문점·합인점·쇼핑센터 -----	100	200	300	15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마. ----- -("다"목의 규정에 의한 업종과 영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 -----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0	200	300	20	(1) -----	30	50	100	5

현행					개정안				
과태료				포상금액	과태료				포상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10	(2) -----	10	30	50	3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7	(3) -----	5	10	30	2

바.(생략)					바.(현행과 같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0	(1) -----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	100	200	10	(2) -----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7	(3) -----	10	30	5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3	(4) -----	5	10	30	2

현행					개정안				
과태료				포상금액	과태료				포상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사.(생략)					사.(현행과 같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	100	200	300	20	(1) -----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50	100	200	10	(2) -----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7	(3) -----	10	30	5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4) -----	5	10	30	2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00	200	300	20	아. -----	50	100	200	10